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1카합20566 효력정지가처분

채 권 자 박창수

양주시 광적면 현석로720번길 177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평

담당변호사 이명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라클

담당변호사 김치중, 최형근, 장재원, 김미소, 김윤진, 박재윤

채 무 자 천도교중앙총부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원회관 9층(경운동)

대표자 송범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큰솔

담당변호사 박요찬

주 문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한 2021. 4. 8.자 면직처분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천도교의 최상위규범인 '천도교헌'에 따라 설립한 종교단체로서 대표자로 교령을, 내부기관으로 교령사, 현기사, 총무원, 종의원, 감사원을 두고 있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감사원장이었다.

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천도교헌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되자, 채무자의 감사원은 2020. 8. 28.부터 2021. 4. 4.까지 4차례에 걸쳐 임시감사회의를 개최하였고, 2021. 4. 4.에 개최된 제4차 임시감사회회에서 채권자에게 "'감사원장, 천도교유지재단 감사, 시천주복지재단¹⁾ 감사'직에 대하여 면직 1년의 징벌을 과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징계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2021. 4. 8. 채권자에게 감사원장직에 대한 면직 1년의 징벌결의가 확정되었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면직처분 통보에 첨부되어 있는 징벌결의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위법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천도교헌 제27조 제2항, 제8조 및 교인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 제3

1) 사회복지법인 천도교시천주복지재단(이하 '시천주복지재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조 위반 : 전형위원회가 해산되었음에도 전형위원회 명의를 도용하여 김경곤 강남교구장의 중앙감사 보선을 주도한 점, 개최하지 않은 전형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점, 허위로 작성한 위 회의록에 교령 및 기관장(연원회의장, 종무원장)을 기망하고 중용하여 서명을 받은 점, 선출직 자격이 없는 김경곤 강남교구장이 중앙감사에 보선되었다고 공문을 작성하여 행사한 점(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2) 시천주복지재단의 감사로서 직무를 유기 : 감사원장이 천도교유지재단과 시천주복지재단의 당연직 감사의 직을 겸하는데, 시천주복지재단 이사회가 자격이 없는 김경곤 강남교구장을 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이사회에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사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3) 감사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수행상 신뢰를 해함 : '감사원장 감사 청구 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중지하는 문서를 시행하는 등의 행위로 감사회의를 방해한 점, 천도교바로세우기 결사에 공동대표로 가담하고, 확정된 징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집행을 방해한 점(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

다. 채무자의 천도교헌 및 교인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감사원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천도교헌

제8조 교인은 선거 피선거권이 있다. 교직의 선거 피선거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 대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2. 교령, 감사원장, 중앙감사, 종의원의원, 유지재단이사 및 복지법인이사의 선거

○ 교인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

제3조 전조 2조 중 피선거권의 자격을 세분하면 전국대회에서 선출되는 임원은 5년 이상, 교구회에서 선출되는 임원은 3년 이상, 교구장이 추천하는 교구부장급 임원은 1년 이상 각각 5관을 간단없이 이행하고 소정의 중학교육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단서 생략)

○ 감사원 규정

제7조 (징벌) 교헌 제76조에 의한 범칙 교인에게는 본 규정에 의하여 출교, 정권, 면직, 근신 등으로 벌을 과하되 감사회의 의결을 경하여 교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제8조 (징벌의 구분) 징벌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② 정권에 해당자

4. 정권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면직에 해당하는 자

1. 교헌을 위반한 자
2. 원주직으로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
3. 교회의 임원으로 6개월 이상 월성미를 불납한 자
4. 원주직으로 연월성을 범용한 자

④ 근신에 해당하는 자

4. 근신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직무는 수행하며 보수 및 활동비 지급자는 3분의 1을 감한다.

2. 채권자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징계결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① 적법한 소집권자인 채권자가 아닌 윤태원이 소집하였고, ② 채권자에 대한 탄핵에 대하여 채무자의 대회에서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③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④ 관계기관의 해석 또는 의견을 구하지 않았고, 채권자에 대한 소명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⑤ 채무자의 교령 송범두가 감사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면직처분 서류를 인가하였다.

나. 또한 채권자에게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면직 1년의 징벌을 과한 이 사건 징계결의는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권징재판에 해당하여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므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520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결의의 효력 여부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감사원장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특히 채무자의 감사원장은 월 190만 원 상당의 급여 또는 활동비 성격의 돈을 지급받으므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결의는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들을 잘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결의에 채권자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징

계결의가 무효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실제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제1징계사유

(1) 제1징계사유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중앙감사가 될 자격이 없는 김경곤을 중앙감사가 되도록 여러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그 전제가 되는 쟁점은 김경곤이 채무자의 중앙감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이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의 중앙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규정 제3조에 따라 5년 이상 5관을 간단없이 이행하여야 하는데, 김경곤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5관은 주문, 청수, 시일, 성미, 기도를 의미하는데, 김경곤은 2019. 7.초경 그중 성미 5년 치를 소급하여 한 번에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의 중앙감사가 될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권자는 김경곤이 중앙감사가 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혹은 감사원장의 지위, 김경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과실에 의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고, 아울러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채권자가 김경곤 강남교구장의 중앙감사 보선을 주도하였다거나 선출직 자격이 없는 김경곤 강남교구장이 중앙감사에 보선되었다고 공문을 작성하여 행사한 점'을 징계사유로 삼은 부분은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다만 징계사유 중 '전형위원회가 해산되었음에도 전형위원회 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개최하지 않은 전형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점, 허위로 작성한 위 회

의록에 교령 및 기관장(연원회의장, 종무원장)을 기망하고 종용하여 서명을 받은 점' 부분의 경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일응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기 어렵다.

(가) 채무자가 채권자가 허위로 작성하거나 교령 및 기관장(연원회의장, 종무원장)을 기망하고 종용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2019. 7. 29.자 전형위원회 회의록(소갑 제41호증)에는 김경곤을 중앙감사로 보선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회의록 하단에 교령 송범두, 연원회의장 정의맹, 종무원장 김춘성, 감사원장 채권자의 서명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전형위원회 명의로 된 회의록이 존재하고, 교령 등의 서명이 있는 이상 전형위원회가 당시 해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권자가 위 회의록을 교령 및 기관장(연원회의장, 종무원장)을 기망하고 종용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우며, 채권자가 전형위원회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 채무자가 적법성을 인정하는 2019. 3. 16.자 전형위원회 회의록(소갑 제40호증)에도 "2019. 3. 16. 1차 전형위원회 결과 '선출 사항 중 결격 사유에 대하여 미선출 등으로 취소 및 보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임 교령, 신임 연원회의의장, 신임 종무원장, 신임 감사원장 4인에게 보선을 위임한다.'는 결의에 의거 아래와 같이 취소 및 보선하기로 한다. 3) 중앙감사 결원된 1명은 부산시교구 감사장인 박기섭으로 보선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교령 송범두, 연원회의장 정의맹, 종무원장 김춘성, 감사원장 채권자의 서명이 각 기재되어 있다. 위 2019. 3. 16.자 전형위원회 회의록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채권자가 2019. 7. 29.자 전형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교령 및 기관장(연원회의장, 종무원장)을 기망하고 종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채무자는 2019. 7. 29.자 전형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될 당시에는 전형위원회가 이미 해산하여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나) 제2징계사유

(1) 제2징계사유는 시천주복지재단 이사회가 자격이 없는 김경곤 강남교구장을 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시천주복지재단의 감사인 채권자가 이사회에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사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천도교헌 제27조 제2호에 의하면 채무자의 대회가 복지법인 이사의 선거를 의결하고, 이 사건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채무자의 대회에서 선출되는 임원은 5년 이상 5관을 간단없이 이행하고 소정의 중학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결국 채무자의 천도교헌 및 이 사건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 시천주복지재단의 이사 또한 5년 이상 5관을 간단없이 이행한 자만이 선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김경곤은 5년 이상 5관을 간단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천도교헌 및 이 사건 규정에 의거하면 김경곤은 시천주복지재단의 이사가 될 자격이 없기는 하였다.

(3)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고, 사회복지법인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공익적인 성격이 강조된다. 이에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다양한 통제를 규정하고 있고,²⁾ 이를 통해 국가로부터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는 사회복지

지법인이 일개 개인의 전횡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을 막고 사회복지법인 그 자체의 역할과 권리를 보호하여, 재산 출연자의 의사와 공익적 요청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인 이상을 두어야 하고,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고(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제6항, 제22조), 나아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하되, 이를 구성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사회복지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단순한 집행기관이 아니고 각자가 공익을 위해 독립적인 기관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그 권한을 공익을 위해 적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는 직책이라고 보인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8159 판결 참조).

시천주복지재단의 정관에서,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정관 제16조 제1항), 이사 정수의 1/3 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며(정관 제16조 제3항), 이사를 임면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정관 제16조 제4항)으로 정하고 있는 등, 시천주복지재단은 위에서 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자체

2) 제16조 법인의 설립 허가 및 등기, 제17조 정관의 내용 및 정관 변경 시 인가, 제18조 제6항 임원 임면 시 보고, 제19조 임원 결격사유, 제22조, 제22조의 2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 및 직무집행 정지, 제22조의 3 임시이사의 선임, 제23조 제3항 재산 변경 허가, 제24조 재산 취득 보고, 제25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26조 설립허가의 취소 등.

적으로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정관을 두고 있다.

(4) 기록에 의하면, 시천주복지재단은 2020. 5.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김경곤을 시천주복지재단의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소명되고, 김경곤의 이사 선임 결의에 어떤 실체적·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는 주장·소명은 없다(채무자는 김경곤이 채무자의 천도교헌에 따라 이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적 성격,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독립적 지위 및 직책, 시천주복지재단의 정관 규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시천주복지재단이 정관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김경곤을 이사로 선임하였음에도, 시천주복지재단의 감사인 채권자가 채무자의 천도교헌 및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김경곤이 시천주복지재단의 이사가 될 자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김경곤의 이사 선임결의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특정 개인이나 다른 단체의 의사에 종속되지 않고 그 의사에 따라 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정관 규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징계를 허용하게 되면 사회복지법인의 법인격을 형해화하고 위와 같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통제를 잠탈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

다) 제3징계사유

(1) 채권자는, 채권자와 관련된 징계절차에서 채권자가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징계절차를 방해한 적이 없고, 채권자가 천도교바로세우기 운동에 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며, 채권자는 이미 '천도교바로세우기 운동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근신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또

다시 천도교바로세우기 운동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가 감사원장 지위에서 그 직무수행상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신뢰를 해하였다고 보아 징계한 것으로서 동일한 사유로 중복처벌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밖에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면직처분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에 기한 징계처분이 곧바로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그런데 ① 위에서 본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주요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제2징계사유의 경우 종교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서의 자율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그 실체적 하자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면직처분의 내용은 '감사원장직 면직 1년'인 것인데, 감사원 규정 제8조 제3항은 면직에 대하여 달리 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정권', '근신'의 경우, 감사원 규정 제8조 제2항, 제4항에서 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면직의 개념상 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인 점(채무자도 '면직 1년'의 징계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있지 못하다)에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채무자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하여 채권자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그 위법의 정도도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

다. 소결

따라서 채권자에게 이 사건 면직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나아가 채권자의 감사원장으로서의 임기가 2022. 3.경까지로 이 사건 신청이 기각되면 임기 및 징계기간의 도과로 인해 채권자로서는 본안소송에서 이를 다룰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시급히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2021. 9. 3.

재판장

판사

고홍석



판사

김두홍



판사

곽동훈

